

부산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가단3497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산

변 론 종 결 2021. 6. 15.

판 결 선 고 2021. 7. 20.

주 문

1. 가. 피고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16. 1.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6. 2. 11. 접수 제68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는 2015. 12. 29. D에게 300만 원을 만료일 2020. 12. 31., 이자율 34.67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D은 2016. 5. 11.경부터 위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7. 12. 31. 주식회사 E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2394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4. 27. ‘D은 원고에게 5,006,222원 및 그 중 2,982,913원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67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5. 4. D에게 송달되어 2018. 5. 19. 확정되었다.

다. D의 아버지 F가 2016. 1. 7. 사망하여 처인 피고와 자녀인 D이 망 F의 재산을 공동상속했는데, 피고와 D은 2016. 1.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6. 2.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은 2016. 5. 26. 파산, 면책신청을 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16하단1048, 2016하면1048), 당시 D은 주식회사 E 외에도 10여 개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1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D의 무자력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를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협의분할 이후 2016년 초경 남편 G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G은 D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등 내용의 2016. 6. 29.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G은 위 소송 당시 교도소에서 수형 중이었고 D은 현재까지도 G으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바, D의 G에 대한 위 위자료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D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D에게는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5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D이 11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약 4개월 후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로 인하여 D의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악화되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망 F의 사망으로 공동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바, D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망 F와 피고 부부의 공동재산이었고, 피고가 오랜 기간 망 F의 병간호를 도맡아서 하는 등,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제2항),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 공동상속인들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D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D은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과 오래 떨어져 지냈고 왕래가 거의 없어 D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5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D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현경

별지

목 록

1. 부산 동구 H 대 69㎡

2. 부산 동구 H

 [도로명주소] 부산 동구 I

 지상 조표 J 시멘트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3.23㎡. 끝.

